

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업종 가이드라인

1. 추진배경

□ 「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(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, '13.9)」을 통해 전국 주요 도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조성 추진 중

* 지식·문화·정보통신산업, 그 밖의 첨단산업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해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다목)

○ 첨단산업 맞춤형 입지확대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간 융·복합이 가능한 적정 유치업종 선정이 중요

⇒ 도시첨단산단에 권장하는 유치업종(지식·문화·정보통신산업·그밖의 첨단산업 관련)을 예시하고, 개발계획 수립*시 활용 추진

*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신규 지정하는 도시첨단산단에 적용

2. 도시첨단산단 유치업종 가이드라인

① '지식산업' 해당업종

○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“지식산업”에서의 도시첨단산업 업종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.

* (정의)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·연구개발업·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지식기반으로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

가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, 연구개발업, 엔지니어링서비스업

나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지식산업

○ 도시첨단산단 개발계획 수립시, “지식산업”에 해당하는 유치업종은 다음 표준산업 분류코드 예시를 참고하여 수립한다.

< 지식산업 관련 표준산업분류 코드예시 >

1.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(분류코드 : 5821, 5822)
2. 연구개발업 (분류코드: 70)
3. 엔지니어링서비스업 (분류코드 : 7212)
4.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(분류코드 :72)
5. 광고물 작성업(분류코드 : 71393)
6.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(분류코드 : 5911, 5912)
7. 출판업 (분류코드 : 58)
8. 전문 디자인업 (분류코드 : 7320)
9. 포장 및 충전업 (분류코드: 75994)
10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(분류코드 : 85301,85302,85659)
 - 가.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
 - 나.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
 - 다.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
11. 경영컨설팅업 (분류코드: 71531)

(재정·인력·생산·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)
12.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(분류코드: 73902)
13. 전시 및 행사 대행업 (분류코드: 75992)
14. 환경 정화 및 복원업 (분류코드: 3900)
15.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(분류코드: 5912)
16.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(분류코드: 59201)
17.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(분류코드: 7140)
18.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(분류코드: 73903)
19. 물품감정, 계량 및 견본 추출업 (분류코드: 73904)
20. 무형재산권 임대업 (분류코드: 6940)
21. 광고 대행업(분류코드: 7131)
22. 옥외 및 전시 광고업(분류코드: 71391)
23.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(분류코드: 741)
24. 보안시스템 서비스업(분류코드: 7532)
25.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(분류코드: 75991)
26. 「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(이 표 7번, 10번 및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27. 「통계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(분류코드: 73909)

② '문화산업' 해당업종

- 도시첨단산단 개발계획 수립시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의 “문화산업*”에 해당하는 유치업종은 다음 표준산업 분류코드 예시를 참고하여 수립한다.

* (정의)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

< 문화산업 관련 한국 표준산업분류 코드예시 >

1. 영화·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(분류코드: 5911, 5912)
2. 음악·게임과 관련된 산업 (분류코드: 5821, 5920)
3. 출판·인쇄·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(분류코드: 1811,1812,5811,5812, 5819)
4.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(분류코드: 5911,5912)
5. 만화·캐릭터·애니메이션·에듀테인먼트·모바일문화콘텐츠·디자인(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)·광고·공연·미술품·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(분류코드: 3391, 5811, 5821, 5911, 7320)
6.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·박람회·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. 다만, 「전시산업발전법」 제2조제2호의 전시회·박람회·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. (분류코드: 75992)

③ '정보통신산업' 해당업종

- 도시첨단산단 개발계획 수립시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의 “정보통신산업*”에 해당하는 유치업종은 다음 표준 산업 분류코드 예시를 참고하여 수립한다.

* (정의) 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

< 정보통신산업 관련 한국 표준산업분류 코드예시 >

1.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(분류코드 : 620)
2.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(분류코드 : 582)
3. 자료처리,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(분류코드 : 6311)
4.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(분류코드 : 63991)
5. 전기통신업(분류코드 : 612)

4 '그 밖의 첨단산업'의 개념정의 및 해당업종

- 도시첨단산단 개발계획 수립시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다목의 “그밖의 첨단산업”이란 “기술집적도가 높고, 기술혁신의 속도가 빠르며, 성장가능성이 높아 관련 산업에 파급 효과가 큰 산업”을 말한다.

- “그 밖의 첨단산업”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.
 - 가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15조 (별표 5)에 따른 첨단업종

 - 나. 「산업융합촉진법」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융합 신산업

- 도시첨단산단 개발계획 수립시, “그 밖의 첨단산업”에 해당하는 유치업종은 다음 표준산업 분류코드 예시를 참고하여 수립한다.

< 첨단산업 관련 표준산업분류 코드예시 >

-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(분류코드 : 20119)2. 산업용 가스 제조업 (분류코드 : 20121)3.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(분류코드 : 20129)4. 합성연료,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(분류코드 : 20132)5.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(분류코드 : 20302)6. 계면활성제 제조업 (분류코드 : 20431)7.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(분류코드 : 20491)8.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(분류코드 : 20493)9.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(분류코드 : 21102)10. 완제 의약품 제조업 (분류코드 ; 21210)11.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(분류코드 : 21300)12. 플라스틱적층,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(분류코드 : 22291)13.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(분류코드 : 23121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14.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(분류코드 : 23129)
15.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(분류코드 : 23213)
16. 그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(분류코드 : 23999)
17.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(분류코드 : 24122)
18. 철강선 제조업 (분류코드 : 24123)
19. 동 압연,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(분류코드 : 24221)
20. 알루미늄 압연,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(분류코드 : 24222)
21.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(분류코드 : 24290)
22. 분말야금제품 제조업(분류코드 : 25911)
23.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(분류코드 : 25934)
24.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(분류코드 : 26110)
25. 다이오드,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(분류코드 : 26120)
26. 액정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(분류코드 : 26211)
27.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(분류코드 : 26219)
28.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(분류코드 : 26221)
29. 전자저항기 제조업 (분류코드 : 26293)
30. 전자카드 제조업 (분류코드 : 26294)
31.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(분류코드 : 26299)
32. 컴퓨터 제조업 (분류코드 : 26310)
33. 기억장치 제조업 (분류코드 : 26321)
34.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(분류코드 : 26329)
35.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(분류코드 : 26410)
36. 방송장비 제조업 (분류코드 : 26421)
37.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(분류코드 : 26429)
38. 텔레비전 제조업 (분류코드 : 26511)
39. 방사선 장치 제조업 (분류코드 : 27111)
40.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(분류코드 : 27112)
41.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(분류코드 : 27192)
42.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(분류코드 : 27199)
43.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(분류코드 : 27211)
44. 전자기 측정,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(분류코드 : 27212)
45.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(분류코드 : 27215)
46.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(분류코드 : 27216)
47. 기타 측정 시험 항해,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(분류코드 : 27219)
48.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(분류코드 : 27321)
49. 사진기,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(분류코드 : 27322)

50.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(분류코드 : 27329)
51.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(분류코드 : 28111)
52.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(분류코드 : 28113)
53.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(분류코드 : 28119)
54. 전기회로 개폐,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(분류코드 : 28121)
55.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(분류코드 : 28122)
56. 축전지 제조업(분류코드 : 28202)
57. 전구 및 램프 제조업 (분류코드 : 28410)
58.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(분류코드 : 28423)
59.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(분류코드 : 28903)
60.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(분류코드 : 28909)
61. 내연기관 제조업 (분류코드 : 29111)
62. 유압기기 제조업 (분류코드 : 29120)
63. 탭,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(분류코드 : 29133)
64.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(분류코드 : 29141)
65.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(분류코드 : 29142)
66.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(분류코드 : 29172)
67. 액체 여과기 제조업 (분류코드 : 29175)
68.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(분류코드 : 29221)
69.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(분류코드 : 29222)
70.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(분류코드 : 29223)
71. 기타 섬유,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(분류코드 : 29269)
72.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(분류코드 : 29271)
73.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(분류코드 : 29272)
74. 산업용 로봇 제조업 (분류코드 : 29280)
75. 인쇄 및 제책용 기계 (분류코드 : 29293)
76. 주형 및 금형 제조업 (분류코드 : 29294)
77.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(분류코드 : 29299)
78.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(분류코드 : 30110)
79.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(분류코드 : 30121)
80.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(분류코드 : 30310)
81.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(분류코드 : 30320)
82.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(분류코드 : 30391)
83.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(분류코드 : 30399)
84. 항공기,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(분류코드 : 31310)
85.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(분류코드 : 31322)

3. 가이드라인 적용시 유의사항

- 본 가이드라인은 제정 즉시 시행한다.
- 유치업종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 규정이 변경 될 경우 그에 따른다.
- 유치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원칙으로 하되, 분류 코드가 없거나 또는 중분류, 세세분류 등이 합리적인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다.
- 지정권자는 도시첨단산단 조성취지를 고려하여, 제조업 위주의 계획을 지양하고 지식·문화·정보통신 및 첨단산업 위주로 유치업종을 계획하여야 한다.
- 다만,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첨단산업·지식산업 등의 기술 혁신 속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시 사업시행자, 산업 전문가 및 산업단지 관리권자 등과 협의하여 상기(예시) 분류코드상 유치업종 외에도 별도의 유치업종을 계획할 수 있다.
- 도시첨단산단 지정권자는 상기(예시) 분류코드상 유치업종 외에도 사업시행자, 산업 전문가 및 산업단지 관리권자 등과 협의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권장 유치업종과 복합 입주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별도의 유치업종을 계획할 수 있다.